

2019-○○○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요지	6학년 0반 교실에서 관람 등급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두 편을 상영하여,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학대를 한 사실이 있음.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청 구 인 : ○○○

소속 ○○초등학교 직위 교사

피청구인 : ○○교육감

피청구인이 2019. 8. 8. 청구인에게 한 정직 1월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 9. 3.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 경과

- 가. 청구인은 1987. 3. 1.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초등학교 등을 거쳐 2015. 3. 1.부터 2019. 9. 1.까지 ○○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2019. 9. 1. ○○초등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9. 1. 24. 10:00경 및 2019. 1. 28. 일시불상경에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0반 교실에서 관람 등급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두 편(○○○○○, □□□□□)을 상영하였다.
- 다. ○○초등학교는 2019. 1. 28. 학부모의 민원전화를 받은 후 같은 날 17:00~18:00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2019. 1. 29.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 성희롱심의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1171)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신고 접수, 피해학생 대상 사안 조사, 청구인의 수업배제 등의 조치를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주의’ 처분을 하였다.
- 라. ○○교육지원청은 2019. 1. 30.부터 1. 31.까지 ○○초등학교에 대해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사안 확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 마. ○○경찰서는 2019.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바. ○○검찰청은 2019. 5. 31.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성적학대)’를 범죄사실로 기재하여 ‘아동보호 사건송치’[죄명: 아동복지법 위반] 처분을 하였다.
- 사. 피청구인은 2019. 7. 3. 교원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1)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공동운영하는 학교폭력 신고전화

아.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7.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한 '정직 1월' 처분을 의결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9. 8. 8. 청구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

2. 처분 사유

가. 징계원인이 된 사실

청구인은 2019. 1. 24.(목) 10:00경 및 2019. 1. 28.(월) 일시불상경에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0반 교실에서 관람 등급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두 편(○○○○○, □□□□□)을 상영한 사실이 있다.

피해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영화를 강제로 시청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학대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검찰청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19. 5. 31.자로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진술

청구인이 2019. 7. 15. 개최된 2019년 제6회 ○○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1. 24.(목) 10:00경 및 2019. 1. 28.(월) 일시불상경에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0반 교실에서 관람 등급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두 편(○○○○○, □□□□□)을 상영하여,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학대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사전에 관람 등급의 확인 과정 없이 상영한 점과 청소년 관람불가 장면이 나왔을 때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과실은 인정하나 영화 관람의 강제성 및 성적 수치심 유발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증거 및 판단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 및 제반 서류와 청구인 본인이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2019. 1. 24.(목) 10:00경 및 2019. 1. 28.(월) 일시불상경에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0반 교실에서 관람 등급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두 편(○○○○○, □□□□□)을 상영하여,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학대를 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철저한 사전 확인 과정 없이 수업 중에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상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영화 상영 도중 문제 장면(청소년 관람불가 장면)이 나왔을 때 상영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성인권 민감성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라. 결론

청구인의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 위반(성학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청구인 주장

가. "아동복지법 위반(성학대)"으로 볼 수 없음.

1) 대법원 판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2)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자체로 성적 학대로 단언할 수 없음.

‘성적 학대’란 대법원 판례가 실시하고 있듯이 ①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킨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② 또 단순히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유해 또는 유해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이를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시청하는 것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영화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문제가 본질적으로 그 영화에 부여된 각 등급에 맞는 시청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영화들은 모두 영화 자체로서 좋은 평판을 지닌 수작으로서, ‘□□□□’는 다수의 영화상을 수상하였고, 가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로서, 결코 성적 수치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영화가 아니며, ‘○○○○○’는 교육 현실을 보여 주는 영화로서 여러 영화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2012년 ○○영화제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관람하며 상당한 호평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청구인이 일부 문제가 되는 장면을 보고도 영화 시청을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비난하고 있으나, 영화의 일부 장면만을 놓고서 영화 시청을 중단시킨다면 오히려 해당 영화의 일부분만이 학생들에게 각인되어 영화의 긍정적인 이해를 방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각 영화의 등급을 판단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이러한 과실을 곧바로 ‘성적 학대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3) 강제적인 시청이었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학생들에게 영화를 강제적으로 시청하도록 하였다고 사실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영화 상영시간에 교실 밖으로 나가는 행동이 일부 있어 ‘교실 안에서’ 자유롭게 영화를 시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결코 영화를 보라고 강제한 것이 아니다.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학생들을 교실로 들어오도록 한 것은 수업시간 중 교실 안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범에 의한 것으로 이것을 강제성의 근거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보도록 하였다는 점만을 가지고 ‘성적학대행위’라고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영화 등급 확인에서의 과실을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징계양정의 위법

피청구인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인의 교육감 표창, 교육부장관 표창을 고려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타 교사들이 원하지 않는 보직인 학년 주임을 맡아 성실히 수행해 왔던 점, 임용 이후 이 사건 이외의 어떠한 징계도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청구인의 연령에 비추어 중징계 처분으로 명예퇴직도 상당기간 불가능해진다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는 과중하여 위법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청구인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보도록 하였다는 점만을 가지고 ‘성적 학대행위’라고 할 수 없고, 강제적인 시청이 아니었으므로 ‘성적 학대행위’를 전제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2019. 1. 24. 및 2019. 1. 28.에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0반 학생을 대상으로 관람 등급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두 편(○○○○○, □□□□□)을 상영한 사실, ② '○○○○○'에는 등장인물 중 거리에서 몸을 팔며 생활하고 있는 여주인공이 속옷만 착용하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남성 및 여성의 신체를 노출하는 장면은 없다는 사실, ③ '□□□□□'에는 여주인공이 속옷만 착용하고 스트립쇼를 하는 장면, 스트립쇼 과정에서 남성의 무릎 위에 앉아 성관계를 하는 듯한 행위 장면, 주인공의 아들이 거미에 물려서 커진 자신의 성기(풍선처럼 부풀어 코믹하게 표현됨)를 가족들에게 보여 주는 장면 등이 있으나, 직접적인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④ 청구인이 해당 영화를 학생들과 함께 보는 중 주인공이 욕설하는 장면, 여자 주인공이 스트립쇼를 하는 장면, 남성의 성기가 형상화된 장면 등을 보았으나 상영을 중단하지 않은 사실, ⑤ 피해 학생들의 설문응답 22건에서 '○○○○○'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7명이고, 여자아이가 창녀인 설정, 야한 부분, 알코올중독으로 알몸으로 쓰러진 장면, 이상한 사진을 보여 준 것, 욕·노출 장면 등을 작성하고 '짜증났다', '화가 났다', '부끄러웠다' 등의 응답을 한 인원이 5명으로 나타난 사실, '□□□□□'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8명이고, '재미있었다'는 응답이 4명이며, 야한 부분, 속옷만 입고 춤추는 장면, 옷을 벗는 장면,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한 것, 여자가 여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과 남자가 바지를 벗는 장면 등을 작성하고 '부끄러웠다', '짜증났다', '힘들었다' 등의 응답을 한 인원이 7명으로 나타난 사실이 확인된다.
-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업시간에 영화를 상영하면서 영화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영화 상영등급을 확인하는 등의 기본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아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교사로서의 기본 책무를 해태하였고, 이에 따라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일부 학생들은 실제로 영화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업시간에 해당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영화가 상영되는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영화 시청에 대한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는 학교에서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할 것으로 신뢰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를 훼손한 것이며,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일부 학생들이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계속 보기를 원했다거나, 해당 영화가 전문가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1) 징계권자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 2) 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청구인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상영에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창녀가 뭐냐고 질문을 하고, 청구인 스스로도 일부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등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영화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상영을 계속함으로써 학생들이 부적절한 장면에 추가적으로 노출되도록 하였으므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③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의 '성(性) 관련 비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2호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2) 위반의 죄가 포함되므로 청구인이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교육현장에서 교사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도감독하에 있는 미성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 여하와 관계없이 무관용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점, ④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서 '1.

성실의무 위반 -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비위 유형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7. 품위유지의무 위반 -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임-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 1월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과중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